

환경마크제도는 환경친화적인 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이다. 이 제도는 직접적인 행정규제에 의존하지 않고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생활정책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 환경마크제도 운영 목적

환경마크제도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덜 해로운 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환경보호운동에 참여케 하고 생산자에게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품을 개발하여 생산 토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환경적 영향을



우리나라 환경마크

기준을 마련하는 제1단계와 환경마크 사용 신청 및 심의를 위한 제2단계로 나눌 수 있다. 환경마크대상 상품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품의 사용과정에서 다른 상품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하고 사용후 폐기과정에서도 분해가 쉽거나 회수가 쉬워야 한다. 그러나 상품속성상 그 자체가 건강에 유해하거나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는 이른바 본질적인 공해상품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식료품이나 각종 제약품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보건위생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제외된다. 제1단계를 거친 대상상품군에 한하여 환경마크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제조단계에서 환경오염방지책이 적절한가, 사용후

환경 마크 제도

줄이게 하는데 있다. 즉 ① 소비자들이 환경상품을 선호하게됨에 따라 환경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게 되고 그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수가 있다. ② 사용하는 제품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전문가의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상품선택시 혼란을 방지할 수가 있다. ③ 생산자로 하여금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상품을 판매하게 하기 위하여 저오염제품의 생산을 위한 지속적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등에 그 목적이 있다.

2) 환경마크 인증 절차

환경마크인증은 대상상품군 선정과 인증

◆ 편집팀

폐기시 처리가 용이한가, 사용시 자원 또는 에너지절약형인가, 품질이나 안전성에 있어서 관련법규의 품질기준 및 규격(KS규격기준 등)에 합치되는가, 가격은 같은 종류의 상품에 비해 적절한가 등을 검토하게 된다.

3) 환경마크 인증업체에 대한 혜택

① 정부조달물품과 관련 우선 구매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재활용산업육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환경마크취득업체 중 자원재활용품 생산업체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환경마크인증상품은 정부조

달물품시 우선 구매 대상으로 지정키로 하였다.

② 기업이미지 제고 :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환경마크 취득은 해당상품의 환경특성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기업이 미지 제고에도 적잖은 기여를 한다.

③ 민간단체의 협조 : 환경단체, 소비자 단체들은 각종 발간물에 '이달의 환경상 품' 란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환경상품을 소개하고 있고 각종 행사에 환경상품판매장을 마련하는 등 환경상품 사용 적극 권장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4) 외국의 환경마크제도

1977년도에 독일이 환경마크제도를 도입한 이래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가로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현재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환경상품에 대한 소비자 여론에 따르면 독일을 비롯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 소비자의 60%이상, 일본 소비자의 80%이상이 값이 비싸도 환경마크제품을 사용한다고 했다.

각국의 환경마크제도는 대부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관掌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환경, 자연보호 및 핵안전부에서, 캐나다는 연방환경부에서 직접 운영한다.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는 정부 표준화기구에서 일본은 환경청의 지도를 받아 재단법인 일본환경협회내에 환경마크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이를 나라는 환경마크 대상 상품군의 기준수립과 마크인증을 위하

여 환경전문가, 산업가 대표, 소비자대표로 구성된 환경마크위원회를 두고 있다. 민간 단체 활동이 활발한 미국은 정부차원의 통일적인 환경마크는 없는 대신 민간단체에서 Green Seal, Green Cross등의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



일본 환경마크



캐나다 환경마크



독일 환경마크